

미국

## 항소법원, 저작권 단일 등록 대상 저작물들은 모두 함께 최초 판매 또는 제공되어야만 그 단일 등록이 유효할 수 있다

김혜성 | 변호사

31개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단일 등록의 유효 여부가 문제된 사안에서 제9 순회 항소법원은 2020년 5월 29일 단일 등록 대상 저작물들은 모두 함께 최초 판매 또는 제공되어야만 그 단일 등록이 유효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 사실관계

- Unicolors, Inc.(이하 ‘Unicolors’)은 원단과 의류에 사용되는 디자인을 만드는 회사이고, H&M Hennes & Mauritz L.P.(이하 ‘H&M’)은 의류 판매회사임.
  - Unicolors의 디자인 중 대부분은 시장에서 대중에게 공개되나, 특정 고객을 위해 디자인된 ‘한정 디자인’이라고 부르는 일부 디자인은 그 특정 고객이 독점적으로 해당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 몇 개월 동안은 모든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음.
- 2011년 2월 Unicolors는 미국 저작권청에 EH101이라고 부르는 2차원 미술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록을 완료함.
  - Unicolors는 단일한 등록 신청 절차를 통해 등록번호 VA 1-770-400(이하 ‘400

번 등록’)로 31개의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하였고, 31개 디자인 중 하나가 바로 EH101임.



Unicolors의 EH101 디자인



H&M의 Xue Xu 디자인

- 2015년 가을, H&M은 ‘Xue Xu’라는 이름의 디자인 무늬가 있는 자켓과 스커트를 판매하기 시작함.
- Unicolors는 2015년, H&M이 자사의 2011년 디자인과 현저하게 유사한 무늬가 프린트된 의류를 판매함으로써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며 소를 제기함.

## 사건의 전개

---

- H&M(이하 ‘피고’)는 Unicolors(이하 ‘원고’)의 ‘400번 등록’은 단일 등록(single-unit registration)이었으므로 그에 포함된 모든 저작물이 한꺼번에 최초 판매 또는 제공되어야만 하나, 원고가 인정한 바와 같이 ‘400번 등록’ 중 9개의 ‘한정 디자인’은 2011년 1월 15일에 최초로 공표된 22개의 다른 디자인들과 함께 최초 제공되지 않았으므로 ‘400번 등록’은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한 신청을 통해 등록된 것이어서 무효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 원고는 저작권청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400번 등록’에 포함된 저작물들이 따로 시장에 공개되었다고 해서 동일한 일자에 모두 공표되지 않았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봄.

## 항소법원의 판단<sup>1)</sup>

- 원고가 EH101 디자인에 대하여 유효한 저작권 등록을 하였는지 여부가 쟁점임.
  - 원고가 자신들의 EH101 디자인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 조건으로 소 제기 이전에 EH101 디자인에 대하여 유효한 저작권 등록을 하였어야 함.
- 저작권 등록 무효 요건으로 저작권청을 속일 의도가 요구되는 것은 아님.
  - 원고가 자신들의 ‘400번 등록’이 단일 등록 요건에 저촉될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특정 디자인이 ‘한정 디자인’이며, 이는 한정 디자인이 아닌 디자인들과 별도로 공표될 것임을 알았는지 여부가 문제임.
- ‘400번 등록’에 속하는 31개의 디자인들은 단일 단위로서 동시에 공표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일 단위의 형태로 등록된 것은 잘못된 것임.
  - 저작권법 관련 시행규칙(37 C.F.R.) 제202.3조 제(b)항의 (4)는 ‘단일 저작물로 의 등록’이라는 표제 하에 공표된(published) 저작물들의 경우에 저작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이 동일한 단위의 공표(the same unit of publication)에 포함되어 있고 그에 대한 저작권 청구인이 동일한 경우 그 저작물들을 단일한 저작물로서 본다고 규정함.
  - 위 시행규칙상 단일 단위의 공표라는 문구가 사용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단일 등록 대상 집합에 속하는 각 저작물들이 하나의 단일한 묶음으로 최초 공표되지

1) Unicolors, Inc. v. H&M Hennes & Mauritz, L.P., 959 F.3d 1194 (9th Cir. May 29, 2020)

않으면 저작물은 단일 단위의 공표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임.

## 평가

---

- 이 판결은 여러 저작들에 대한 단일 등록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을 명확히 한 것에 의미가 있음.

### 참고 자료

<https://bit.ly/34hxd2M>

<https://bit.ly/3gja8Pz>



# 성당의 내부 리모델링은 건축가의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오혜민 | Johannes Gutenberg-Universität Mainz LL.M.,  
Humboldt-Universität zu Berlin 법학박사과정

2020년 7월 14일 베를린 지방법원은 베를린 성 헤드빅스 대성당 (der Berliner St. Hedwigs-Kathedrale)의 내부 리모델링은 과거 재건축을 맡았던 건축가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함.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은 건축물의 소유권과 건축물과의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 충돌과 관한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례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됨.

## 사실관계

- 베를린 성 헤드빅스 대성당 (der Berliner St. Hedwigs-Kathedrale 이하, 대성당)은 독일에서 역사적 의미가 있는 가톨릭 성당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진행 중이던 1943년, 베를린 상공 대공습을 받아 완전히 전소된 이후 1953년부터 1963년까지 진행된 재건축사를 통하여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대성당은 재건축을 위하여 2018년 9월을 기점으로 2023년까지 내부가 폐쇄된 상황임.
- 대성당의 내부 리모델링과 관련한 분쟁
  - 당시 건축 내부를 재건축했던 건축가 Hans Schwippert의 후손 및 복원에 참여했던 예술가를 비롯한 6인의 원고는 베를린 대주교를 상대로 대성당의 내부 재건축에 대하여 건축저작권의 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함.
  - 대성당의 리모델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재건 당시 의도되었던 과거 동독시절의 성당 스타일을 표현한 현재의 내부구조가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 파괴될 것이라

고 주장함. 과거 동독시절의 성당 스타일을 복원한 것은 재건에 참여했던 건축가 Hans Schwippert (1899-1973)의 주요한 의도이며, 그는 과거 다양한 건축물에 대한 재건에 참여하면서 동서독의 조화를 위한 의도를 담은 건축을 진행한 이력이 존재함.

- 원고는 대성당 내부의 리모델링 계획은 과거 건축가가 의도하여 설계한 주요 부분의 변경이 필연적이며, 더 나아가 부분적으로 파괴되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함. 이는 저작권을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함.

## **연관 독일연방대법원의 판례 및 본 사건에서의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 (LG Berlin 15 O 389/18)**

- 건축물 소유권과 저작권의 충돌에 관한 법원의 판례 (Urteile vom 21.02.2019, Az.: I ZR 98/17 und I ZR 99/17)
  - 독일 연방대법원의 소위 ‘만하임 HHole 및 PHaradies’ 사건 (Urteile vom 21.02.2019, Az.: I ZR 98/17 und I ZR 99/17)은 미술관의 건물과 부속되어 함께 설치되어진 미술품이 미술관 리모델링 과정에서 일부 제거된 상황에 대하여 설치미술품의 예술가가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작품의 복원과 보상을 청구한 사건임.
  - HHole은 2006년 제작된 공간설치미술품으로서, 미술관 각 층의 천장 부분이 서로 연결되는 7개의 다양한 구성 부품이 주요한 요소임. 미술관은 2012년 건물 재건의 일환으로 미술관의 천장 및 지붕 부분의 일부 해체를 결정하면서 설치미술품 일부의 해체가 예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부분은 이미 제거가 된 상황이었음. (Az.: I ZR 98/17)
  - PHaradies은 2006년 제작된 조명설치미술품으로서 미술관의 지붕과 돔 영역에 설치된 조명설비가 미술품의 주요 부분임. 2010년 미술관의 지붕개조작업이 진행되면서 모든 조명설비가 제거되었고 2013년까지 이 부분이 재건되지 않았음.

(Az.: I ZR 99/17)

- 독일 연방대법원은 HHole과 PHaradies와 같이 건축물 혹은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저작물의 저작권이 건물의 소유권 행사로 인하여 침해되는 경우, 양측의 이익을 비교형량 하여야 한다고 판단함. 그러나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상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건축물의 이용 또는 개발을 위한 건축물의 소유자의 이익은 저작물을 보존하기 위한 창작자의 이익에 우선한다고 판시함.

○ 본 사건에 대한 베를린 지방법원의 판결

- 베를린 지방법원은 소유권에 기인하여 건축물에 변경을 가함에 있어 건축가 또는 예술가의 저작권법상의 보호이익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소유권이 우선한다고 판단함.
- 특히, 이 사건의 건축물의 경우 예술적인 측면보다는 미사 진행 등 실용적인 부분이 더욱 중시되어야 함. 그러므로 이를 위한 내부 인테리어의 적절한 구조적 변경의 이익은 저작권에 의한 창작자 또는 예술가의 보호이익에 우선함.

## 평가 및 시사점

---

- 건축물 혹은 건축물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소유권과 저작권이 충돌하는 경우와 관련하여 2019년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큰 의의를 가지고 있음.
  - 관련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존재하고 있는 건축물의 내부 리모델링과 관련하여서도 독일 연방대법원과 같은 판단기준이 적용되어 내부 리모델링이 허용되었다는 점이 주목되어지고 있음.
- 그러나 본 사건의 경우 예외적으로 건축가가 설계한 현재의 내부 인테리어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의미가 크다는 주장이 존재함.
  - 이 사건은 향후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등을 통하여 다툼이 지속될 여지가 존재함.

## **참고 자료**

<https://bit.ly/3fOS1R6>

<https://bit.ly/33LWMsB>

<https://bit.ly/33LWUs5>

<https://bit.ly/2XQqSr6>

<https://bit.ly/3iCh8sx>

<https://bit.ly/2FI9C11>





## 일본 총무성, 저작권 귀속 명확화를 도모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 적정화 가이드라인' 개정안 발표

권용수 | 동지사대학 법학연구과 법학박사

일본 총무성은 업무위탁내용별 저작권의 귀속에 관한 명확화, 제작회사 간의 거래 적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함.

### 배경

- 총무성은 2019년 11월부터 관계부처와 협력해 실시한 가이드라인 준수 상황 조사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에 대해 방송사업자와 프로그램 제작회사 간에 인식 차이가 존재하는 것, 프로그램 제작회사 간의 하청거래에 대해서도 적정화 과제가 존재하는 것, 방송사업자에 의해 하청법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성과물 작성 위탁)의 범위에 관한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것이 분명해짐.
- 또한, 총무성이 매년 실시하는 가이드라인 폴로업 조사(フォローアップちょうさ, follow-up survey) 결과에서도 프로그램 제작회사 간 하청거래 적정화와 관련된 과제 등이 수치적으로 확인됨.
- 한편, 2020년 7월 17일에 각의 결정된 '규제개혁실시계획'(規制改革実施計画)에서는 저작권의 귀속 등에 대해 계약 형태별로 유형화하고, 양식의 충실화를 도모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

- 이상을 토대로 총무성은 2020년 7월 31일 ‘방송 콘텐츠 제작 거래 적정화에 관한 가이드라인’(放送コンテンツの製作取引適正化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개정안을 작성함.

## 개정안의 주요 내용

---

- 업무위탁내용별 저작권의 귀속 등에 관한 명확화
  - 개정안에서는 발주·계약 체결 단계부터 발주자와 수주자 간에 인식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형태 및 그에 연계된 저작권의 귀속 등에 관한 일반적·개괄적인 정리표를 작성함.

업무위탁 유형	가이드라인상의 계약형태 (발주내용)	방송국 프로그램 단위의 종별	프로그램 형태 (저작권법상의 발의와 책임의 소재)	원시적 저작권 귀속 (저작권 양도 유무)	이차사용료 분배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하청법 대상)	완전제작위탁형 프로그램 완전제작위탁형 프로그램	①	완전제작위탁형 프로그램(프로그램 전체) (민방)	프로그램 전체 (발의와 책임이 제작 회사)	하청사업자(제작회사) (저작권양도는 거의 없음)	있음	
		②	방송국 제작프로그램의 일부(민방)	프로그램 일부 (발의와 책임이 제작 회사)	하청사업자 (제작회사) (방송국에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이 있을 수 있음)	있음/없음 (계약상 저작권 귀속에 따름)	
	그 밖의 정보성과물	완전제작위탁형 프로그램 이외의 프로그램 전체 또는 프로그램의 일부	③	외부제작위탁(NHK)	프로그램 전체 (발의와 책임이 NHK와 제작회사)	NHK와 제작회사 (저작권은 공유)	있음
			④	방송국 제작프로그램 (민방)	프로그램 전체 (발의와 책임이 방송국)	방송국	없음
			⑤	방송국 제작 프로그램 일부(민방)	프로그램 일부 (발의와 책임이 방송국)	방송국	없음
		방송소재 <sup>2)</sup>	⑥	방송국 제작 프로그램 (민방) <sup>3)</sup>	방송소재(저작물) (저작자가 하청사업자 (제작회사))	하청사업자 (제작회사) (방송국에 저작권 양도 있을 수 있음)	없음 (각본 등의 경우 허락이 있을 수 있음) 외부 일부 위탁 (NHK)은 계약에 따른 특별 보수 지급
			⑦	방송국 제작 프로그램 (민방) <sup>4)</sup>	방송소재(비저작물) (저작권법 대상 외)	- (저작권법 대상 외)	없음
	역무위탁 <sup>1)</sup>	감독/연출, 조명, 음성 등의 위탁	⑧	방송국 제작 프로그램 (민방) <sup>5)</sup>	- (저작권법 대상 외)	- (저작권법 대상 외)	없음 외부 일부 위탁 (NHK)은 계약에 따른 특별 보수 지급

- 1) 재위탁에 한해 하청법의 '역무제공위탁'으로서 동법의 대상이 됨.
- 2) 각본, 나레이션 원고, 배경음악 등을 말함.
- 3) 외부 일부 위탁에 포함되는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부분(NHK)
- 4) 외부 일부 위탁에 포함되는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 부분(NHK)
- 5) 연출 위탁(NHK), 외부 일부 위탁에 포함되는 역무위탁 부분(NHK)

- 그리고 개정안에서는 ① 발주자가 발주단계에서 수주자에게 ‘업무위탁의 유형’이나 ‘방송국의 프로그램 단위 종별’의 어느 거래에 해당하는지 외형적으로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 ② 발주자가 수주자에게 유형이나 거래 종별에 대해 외형적으로 명확히 전했다고 해도 해당 종별에 해당하는가는 실제 거래내용에 기초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함.

○ 제작회사 간의 거래 적정화

- 방송사업자와 원청이 되는 프로그램 제작회사뿐만 아니라 원청과 2차 하청이 되는 프로그램 제작회사 간의 하청거래에도 인식의 차이나 거래 적정화 등에 관계된 문제가 있음.
- 이를 고려해 개정안에서는 발주자가 되는 프로그램 제작회사도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함.

○ 하청법의 해석 명확화

- 개정안에서는 하청법의 대상이 되는 거래(정보성과물 작성 위탁)가 포함되는 거래 예컨대, 정보성과물 작성 위탁과 역무위탁이 복합되어 분리할 수 없는 거래의 경우 일체로서 하청법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명시함.

## 동향

---

- 총무성은 2020년 8월 1일부터 9월 4일까지 가이드라인 개정안에 관한 의견모집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개정판 가이드라인을 공표할 예정임.

## **참고 자료**

[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ryutsu04\\_02000143.html](https://www.soumu.go.jp/menu_news/s-news/01ryutsu04_02000143.html)

<https://xtech.nikkei.com/atcl/nxt/news/18/08483/>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00650.pdf](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700650.pdf)



## 중국 최고인민법원, 합리적 추정규정을 사용하여 저작권자 보호 강화

김 군(JIN JUN) | 중국 북경 소재 경사법률사무소 중국 변호사

2020년 8월 5일, 최고인민법원은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이하 '초안'이라 함)>을 발표함. 해당 내용은 소송에 있어 입증책임에 대한 권리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정 규정을 제시함. 초안은 2020년 9월 20일까지 대중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에 있음.

### 초안의 추정 규정 활용에 관한 내용

#### ○ 권리 확정에 대한 추정 규정 활용

- 권리자가 최초로 증거를 제출하여 입증책임을 부담한 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반대의 증거도 제시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권리자)가 주장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이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에 존재한다고 추정해야 함.

#### ○ 성명표시에 의한 권리 귀속 추정규정 적용

-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행사는 선등록을 전제로 하지 않음. 저작물, 실연, 음반에 통상적인 방식으로 서명하는 자연인, 법인, 조직이 해당 저작물, 실연, 음반의 저작권자 또는 저작인접권자로 추정함. 다만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함. 성명표시에 의한 권리 인정에 있어서 저작물, 실연, 음반의 성격, 유형, 표현 형식, 업계의 관행, 대중의 인지 습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권리자의 입증책임 경감

- 권리자가 해당 권리의 존재, 이용허락 또는 침해의 성립을 주장하고 피고가 상반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성명표시의 추정규정을 적용하여 권리 귀속을 확정할 수 있다면, 권리자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계약서나 기타 서면 증거를 제출할 책임이 면제됨.

○ 합법사용에 대한 입증책임

- 권리자가 향유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대하여 피고의 사용 행위가 적법함에 따라 권리침해의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피고는 권리자로부터 수권(이용허락)의 취득 또는 저작권법 및 관련법률, 법규, 사법해석(司法解釋)<sup>1)</sup>에 따라 권리자의 허가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함.

## 초안 기타 주요 내용

---

○ 증거보전 유형 추가

- 소송 당사자들이 블록체인(Block Chain), 타임스탬프(Time Stamp) 등 방식을 통하여 증거를 보전하는 것을 초안에서 인정함.
- 현재 사법 실무에 있어서 타임스탬프(Time Stamp)방식으로 보전한 증거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었으나 구체적인 규정이 미비된 상황이라 다수 당사자들이 보수적인 공증의 방식을 많이 선호함.
- 향후 소송에서 증거를 제출할 경우, 공증의 방식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타임스탬프를 통하여 증거를 보전할 수 있으므로 소송의 효율성이 향상된다고 보여짐.

○ 권리자의 손해를 충분히 고려하여 손해배상액 확정

---

1) 중국의 '사법해석(司法解釋)'은 시행 중인 특정 법률에 더 구체적인 해석과 보완을 하고자 최고인민법원 및/또는 최고인민검찰원이 발표하는 유권해석이며 판결의 근거로 적용할 수 있음.

- 종합적으로 소송 청구의 유형, 저작물의 시장가치, 침해자의 과실 여부, 침해 행위의 성질 및 규모, 손해 결과의 정도 등 요소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확정함. 권리 침해자가 고의적으로 권리를 침해하여 정황이 심각한 경우, 또는 권리자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인민법원은 반드시 법에 따라 심사하여 확정하여야 함.

## 의의

- 중국 현행 <저작권법> 제11조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에게 귀속되며, ...반대의 증거가 없는 이상 저작물에 서명한 자를 ‘저작자’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법실무에 있어서 판사의 재량행위가 엄격히 제한되고 있어 추정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됨.
  - 초안은 권리 귀속에 대한 추정규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작물뿐만 아니라 실연, 음반까지 포섭하여 추정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고 성명표시에 의한 추정으로 저작물, 실연, 음반의 권리귀속을 직접 확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음.
  - 초안이 통과되면 향후 소송에 있어 권리 확정을 위해 저작권등록증명 또는 창작과정의 기록 등의 증거가 없이도 저작물, 실연, 음반에 기재된 성명으로 해당 권리를 확정할 수 있음.

### 참고 자료

<http://www.court.gov.cn/zixun-xiangqing-246041.html#>

<https://baijiahao.baidu.com/s?id=1674178721101486286&wfr=spider&for=pc>





# 정부, Facebook, Google 등의 기술회사에게 뉴스기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률 초안(draft mandatory code)을 발표함

최종모 | 수성대학교 법률회계과 강사; 법학박사.

호주 공정거래위원회(Australian Competition and Consumer Commission; ACCC)는 호주의 뉴스사와 구글, 페이스북 등 기술회사 간의 급격한 협상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용료 시스템을 확립하여 Facebook과 Google 등의 기술회사에게 뉴스기사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도록 강제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미디어의 독립성을 보호하도록 하는 법률 초안(Draft news media bargaining code)을 발표함.

## 동향

- Facebook, Google 등의 기술회사에서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이용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언론사 홈페이지 트래픽은 감소하고, 이로 인해 언론사의 광고수익은 장기간 감소하고 있음. 예를 들어 호주에서 온라인 광고에 100달러를 지출한다고 했을 때, 그 1/3은 Facebook과 Google에 사용됨.
- 이러한 언론사의 광고 수익 감소는 약 10년 동안 3,000개의 저널리즘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음.
- 2020년, 호주 재무부 장관은 기술회사가 뉴스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이용료 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기술회사가

언론사와 45일 이내에 중재를 통하여 합의하지 못할 경우에는 뉴스콘텐츠 사용에 관하여 정부가 직접 개입할 것이라고 함.

- 이에 Google은 해당 초안에 대하여 깊은 실망과 우려를 표명하였으며, Facebook는 초안에 대하여 검토 중이라고 밝힘.

## **호주 공정거래위원회(ACCC)의 뉴스미디어 협상 법률 초안(Draft news media bargaining code)<sup>1)</sup>**

- 뉴스사(news companies)가 기술회사(Tech Companies)에게 콘텐츠 비용 지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뉴스피드 및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콘텐츠에 대하여 기술회사와 협상할 수 있음.
- 해당 법률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알고리즘 순위 변경 및 뉴스 발표에 대한 사전 통지를 제공하고,
  - 원본의 뉴스 콘텐츠를 적절하게 인식하여야 하고,
  - 기술회사가 뉴스 이용자와 뉴스 콘텐츠의 상호 작용을 통해 수집된 이용자 데이터를 제공하는 방법과 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벌칙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협상, 중재 또는 조정에 대한 참여를 거부하는 것을 포함하여 선의로 협상하지 않는 경우
  - 최소 약정을 위반한 경우
  - 차별금지 조항을 위반한 경우
  - 상기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A\$ 133,200(€ 81,000, £ 73,033, \$ 95,450, 한화 1

---

1) ACCC, Q&As: Draft news media and digital platforms mandatory bargaining code, July 2020.

억 1천 3백만 원)을 부과할 수 있음.

- 소 제기 등의 법원 절차가 시작되면, 1건당 최대 A\$ 10m (£ 5m; \$ 7m; 한화 84억 8천 5백만 원) 또는 지난 1년 동안의 기술회사 현지 매출액의 10%나 기술회사의 이익의 3배 중 더 큰 것을 부과할 수 있음.

## 평가 및 전망

- ACCC의 뉴스 콘텐츠에 대한 비용 지불과 관련한 법률 초안은 현재 Facebook과 Google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나, 향후 다른 기술회사로도 확대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자료

-<https://bit.ly/3gSs7xx>

-<https://reut.rs/30TfNr7>

-<https://www.bbc.com/news/world-australia-53604477>

-<https://cnb.cx/3gZ8ALW>

-<https://politi.co/3g0ulcZ>